

2024년도 제1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4. 3. 7.(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원(분과위원장), 최진원, 하병현, 한승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4-15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48건(안전번호 제2024-8107호~8654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4-8107호(순번 1번)는 국내 합법 시장에서 제공되었던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하고 있는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4-8108호~8112호(순번 2번~6번)는 블로그에서 뮤지컬의 무단촬영 영상 등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4-8113호~8134호(순번 7번~28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4-8135호~8654호(순번 29번~548번)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

에 제공한 사안으로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원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19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4-1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원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에 관해 의견을 구함.
- 박현주 전문위원: 제2024-15회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박현주 전문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제2호 안전 비공개 처리에 동의함.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전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고, 제2호 안전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5쪽~17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박현주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김원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주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25개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1,004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이번 심의의 경우 긴급 심의 안건이 있어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안건 외에 추가된 목록이 있음.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의 국내 더빙판을 ♣♣♣ 블로그에 게시한 사안임.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모니터링 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일본 애니메이션 '♠ ♠♠ ♠♠♠'의 국내 더빙판으로, 국내 방송 채널인 ♣♣♣♣에서 2009. 4. 6.부터 2009. 5. 25.까지 방영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국내 합법 시장에서 제공되었던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하고 있는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모두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뮤지컬 불법복제물의 교환·판매 거래글이며, 총 5건임.
(순번 2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블로그에 '♣♣♣♣,♣♣♣ ♣♣♣', '■ ■ ■ ■ ■ ■ ■ ■ ■ ■ ■ ■' 등의 제목으로 뮤지컬 밀캠, DVD, 온라인 생중계 녹화 영상 등을 교환 또는 판매하고 있음. 게시물에는 게시자가 보유한 녹화물 등의 제목, 공연일, 출연자 목록 등이 다수 게시되어 있음. 2024. 3. 4. 기준 다수의 비밀댓글이 게재된 점을 볼 때 심의대상 게시물 게시자는 비밀댓글을 통하여 영상 파일의 거래 조건을 교섭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2번~6번 심의대상 게시물은 블로그에서 뮤지컬의 무단촬영 영상 등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2번~6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검토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6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7번~2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중고거래 사이트 ‘◆◆◆◆’와 ♣♣♣ 카페 ‘♥♥♥♥’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으로 총 47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7번~28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7번~2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9번~54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게시물 수는 941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복제한 방송, 영화,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드라마 '살인자ㅇ난감'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37번은 웹하드에서 드라마 '살인자ㅇ난감' 1~8회 전체 분량을 350캐시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4. 2. 9.부터 넷플릭스에서 방영중인 드라마임.
(드라마 '닌자의 집'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46번은 웹하드에서 드라마 '닌자의 집' 1화~8화 전체 분량을 220포인트에 판

매 중인 사안임. 2024. 2. 15.부터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임.
(만화 '거짓말쟁이 스텔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39번
은 웹하드에서 3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4. 2. 20. 출간되었
으며, 알라딘 등 사이트에서 5,400원에 판매중인 만화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
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
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에 이용해 제공하는 사안으로 시정
권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9번~54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
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
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4-8107호(순번 1번)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4-8108호~8112호(순번 2번~6번)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4-8113호~8134호(순번 7번~28번)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4-8135호~8654호(순번 29번~548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김원 분과위원장이 제1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1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3. 14.

분과위원장 김 원

위원 최진원

위원 하병현

위원 한승원